「2025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큐레이터・에듀케이터)」 지원관 3차 공모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2025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큐레이터・에듀케이터)> 지원관 3차 공모를 진행하니, 관심 있는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 미술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5월 22일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장

Ⅰ.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에 '큐레이터・에듀케이터' 인건비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 3차 공모 신청 가능한 경우

・1-2차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관, 1-2차 공모 선정관 중 인력 미채용관 → '신규신청관' 선택

・현재 전문인력 1명 지원 중이며, 인력 추가지원을 원하는 관 → '추가지원 희망관' 선택

*현재 전문인력 1인 지원 중인 관은 1인 추가 지원신청할 수 있음. 다만 기 결정된 미술관 지원기간(1년~3년)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관의 지원 결정사항(지원 구분(경력관 또는 신규관) 및 지원 기간(1년~3년) / 2월 12일 발송 공문 참고)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함

예시) -현재 1년 지원 결정된 관이 3차공모에서 3년 지원 신청 : 불가(심사대상 제외)

-현재 3년 지원 결정된 관이 3차공모에서 1년 지원 신청 : 불가(심사대상 제외)

-현재 3년 지원, 큐레이터 1인 지원 결정된 관이 3차 공모에서 에듀케이터(또는 큐레이터) 1명 추가 지원신청 : 가능

※ 3차 공모 신청 불가한 경우 : 현재 전문인력 2인 지원 중인 관

지원기관 요건	
일반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는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재단법인 및 기업 설립·운영관 포함) 2) 공고일 기준,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관 (관장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포함. 단, 국고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근무하는 학예사는 자체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인구감소 지역 및 인구감소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는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재단법인 및 기업 설립·운영관 포함) 2) 공고일 기준,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상근학예사(*)가 있는 관

관심지역 한정	*상근학예사 자격요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위 '일반'과 동일) -학예사자격증 미소지자 : 미술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관련 경력(전시, 교육, 연구, 컬렉션관리 등) 5년 이상 보유자

[지원 제외]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미술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명단에 포함된 경우)
- 국·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 사립박물관
- 관장(또는 대표)의 성범죄 이력 확인 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지원관 관리 기준 신설(2025년 도입)

미술관의 전문인력 지원사업 또는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참여 횟수에 따라 '경력관'과 '신규관'으로 구분.

단, 경력관은 자율성을 가지는만큼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본 사업을 충실하게 운영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기준법·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유관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경력관] 전년도(2024년) **기준 인력지원사업 참여 횟수 3회 이상인 관**

[신규관] 금년도(2025년) **인력지원사업 신규참여관(=금년도에 최초로 지원관 확정),**
전년도(2024년) **기준 인력지원사업 참여 횟수 2회 이하인 관**

*1개 관이 사업에 따라 경력관, 신규관에 모두 해당할 경우 : 각 사업별 해당하는 기준으로 관리
(예시 : 00미술관이 예비학예인력은 경력관, 전문인력은 신규관일 경우 → 예비 경력관, 전문 신규관 적용)

< 경력관과 신규관 구분에 따른 처우표(안) >

항목/구분	경력관	신규관
지원기간(미술관)	단년, 다년(3년) 지원 모두 가능 (2년 이상 지원 시,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 및 인력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함)	단년 지원만 가능
지원 기간(지원인력)	10개월 내외~36개월 (미술관의 결정에 따름)	10개월 내외~12개월
협회 주최 사전교육 참여	자유 (자체적으로 실시)	의무
협회 지원 안면인식 근태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	의무
지원인력 재택근무 관련	·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금년도 총 지원기간의 5~15% 이내로 허용할 수 있음 ·단, 기관의 책임실무자가 '재택근무종합매뉴얼(고용노동부 발행)'에 따른 운	·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금년도 총 지원기간의 5% 이내로 허용할 수 있음 ·(좌동)

항목/구분	경력관	신규관
	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에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함. 사후 승인은 불가하며(단, 병이나 사고 등 갑작스런 사유 발생 시는 협회와 협의), 이 경우 해당 기간만큼 지원금 환수 조치함	
협회 주최 직무교육 참여	자유 (자체적으로 실시)	의무
사업비(급여지원금) 교부	연 2회 ・3월 교부 : 1월 또는 3월~9월 급여지원금 ・10월 교부 : 10월~12월 급여지원금 *매월 지출에 따른 상시점검 매월 실시(협회)	3월부터 매월 10일경 교부 *매월 지출에 따른 상시점검 매월 실시(협회)
월별 자료제출 (급여명세서, 업무일지 등)	-의무 : 급여명세서 -자유 : 업무일지(관 자체적으로 관리)	의무 -업무일지 -급여명세서
회차별 자료제출(근무실적포트폴리오. 근무평가서)	의무	의무
평가 및 모니터링	경력관, 단년 지원/다년 지원 구분에 적합한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진행(전담심의위원)	신규관에 적합한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진행(전담심의위원)

[참고] 지원기관 의무사항

・미술관 자부담금 의무 부담

구분	세부 내용
① 지원인력의 월 급여액 중 일부 자부담	급여액 중 최소 '500,000원 이상/월' 자부담
② 지원인력의 4대보험 필수 가입 및 이에 따른 4대보험 기관부담보험료	약 260,000원/월 내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따라 금액 상이할 수 있음)

・생체인식 근태관리시스템 필수사용을 통한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관) 연차제도 시행 및 대체휴무 제공 등 권고
・국가보조금지원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의무 사용
・지원약정서 준수 의무(전문인력 업무 범위, 근무시간 준수 등)

○ **지원 규모 : 약 4명 내외 (인력 구분은 신청 수에 따라 배분)**

※ 3차 공모 신청 가능한 경우

• 1-2차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관, 1-2차 공모 선정관 중 인력 미채용관 → '신규신청관' 선택

• 현재 전문인력 1명 지원 중이며, 인력 추가지원을 원하는 관 → '추가지원 희망관' 선택

*현재 전문인력 1인 지원 중인 관은 1인 추가 지원신청할 수 있음. 다만 기 결정된 미술관 지원기간(1년~3년)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관의 지원 결정사항(지원 구분(경력관 또는 신규관) 및 지원 기간(1년~3년) / 2월 12일 발송 공문 참고)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함

예시) -현재 1년 지원 결정된 관이 3차공모에서 3년 지원 신청 : 불가(심사대상 제외)

-현재 3년 지원 결정된 관이 3차공모에서 1년 지원 신청 : 불가(심사대상 제외)

-현재 3년 지원, 큐레이터 1인 지원 결정된 관이 3차 공모에서 에듀케이터(또는 큐레이터) 1명 추가 지원신청 : 가능

※ 3차 공모 신청 불가한 경우 : 현재 전문인력 2인 지원 중인 관

○ 지원 기간

[미술관] 단년(1년) 또는 다년(3년) 선택 가능

- 지원관 관리 기준에 따라 공모 시 선택하며, 지원인력의 근무기간은 관이 결정함
- 다년 지원관은 총 지원관의 40% 이내로 선정하며, 2024년 우수관 및 우수인력 배출관(신청 시 2년(2025~2026년) 지원관으로 자동 선정)을 포함함
- 2년 이상 지원 시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 및 인력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함

[지원인력] 미술관의 결정에 따름(10개월~36개월)

- **신규채용(2025년 6월 4주 이후 지원시작 예정)만 가능**하며, 금년도 지원기간(=근로기간)은 사업 기간과 동일한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2026년 근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별도 안내 예정)
- 다년 지원인력의 경우 급여액이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시작일 : 2025년 6월 4주 이후(예정)

○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빠른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는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한국 미술계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과 자생력 강화, 한국예술의 해외 진출 지원 확대, 미술 축제를 통한 예술시장 조성, 관광산업 활성화, 중앙·지방 연계 체계 마련, 단기가 아닌 다년도 지원 확대를 통한 체계적인 프로젝트 운영 도모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K-컬처'로 통칭되는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재, 미술을 포함한 질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술관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서비스 기관임

- 이에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의 고유기능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 전문인력인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를 다년간 지원함으로써 미술관 전문인력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술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전문인력의 다년 지원을 통해 미술관은 중장기적인 운영계획 및 프로젝트 수립·실행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인력들은 장기 근무 보장을 통해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커리어를 상승시키고 미술관의 역량 증진에 이바지
- 또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진행한 '사립미술관을 위한 운영규정 및 매뉴얼 연구개발'에 대한 현장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하여 사립미술관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미술관으로의 발전을 도모

○ 전문인력 자격요건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 학예사자격증(정1,2,3급 및 준학예사) 소지자	• 정1급 또는 정2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자격증(정3급 학예사자격증, 교사(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준학예사, 교사(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1년 이상 경력자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관심지역 한정]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교사, 평생교육사) 소지자
[※ 채용 불가 대상] 1) 해당 기관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인력(등록 유지 요건에 해당하는 상근학예사 포함) 2) 재학생 및 휴학생 (단, 졸업예정자, 수료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3) 4대보험 전체가입 불가한 자 (단, 조기연금 및 타 연금 수령자는 가능) 4) 대표(또는 관장) 및 기존 임직원과의 관계가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자 • (예외) 아래 ①~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③의 적격자가 문체부의 최종 승인을 획득한 경우만 허용함 ① 서울·6개광역시(군 단위 이하는 허용) 제외한 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위치한 미술관 ② 미술관 자체 공모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지원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無 ③ 비동거 자녀 및 친척 중 4대보험 전체 가입이 가능한 적격자 有 •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월 지원금액, 미술관 자부담 및 기본 급여

※ 2024년 대비, 급여지원금 3.0% 인상(2025년 공무원급여인상률 적용)

구분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정부지원	관 자부담		급여액
			의무(*)	자율	

큐레이터	정1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2,130,000원	500,000원	∝	2,630,000원+∝
	정2급	2,024,000원			2,524,000원+∝
	정3급	1,918,000원			2,418,000원+∝
	준학예사	1,812,000원			2,312,000원+∝
에듀케이터	정1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2,130,000원	500,000원	∝	2,630,000원+∝
	정2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2,024,000원			2,524,000원+∝
	자격증(정3급 학예사, 교사(석사학위 이상) 중 하나)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1,918,000원			2,418,000원+∝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준학예사, 교사(학사학위 이상) 중 하나)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1,812,000원			2,312,000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1년 이상 경력자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관심지역 한정]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교사, 평생교육사) 소지자	1,759,000원			2,259,000원+∝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기관부담 보험료(약 26만원/월 내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따라 금액 상이할 수 있음)는 별도임.

*전문인력 지원 중 자격증 승급될 경우, 신규 자격증 발급일자부터 급여지원금 증액하여 지원함(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모두 해당)

※ 교통비 추가 지원 : 아래 ①, ② 지역에 소재한 미술관 지원인력 1인 당 월 10만원

① 2021.10.19.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89개소)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18개소)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구분	인구감소 관심지역(18개)
부산	금정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경기	동두천시, 포천시
경남	사천시, 통영시
경북	경주시, 김천시
전북	익산시

② 교통이 불편한 지역(서울시 및 6개 광역시 제외) : 지원관 선정 시 결정

○ 인력별 업무범위 : 2024년과 동일함(변경 없음) / 별첨4 참조

Ⅱ. 지원관 공모

○ 공모 신청기간 : ~2025년 5월 30일(금) 오후6시까지

○ 신청방법

신청 구분	세부 내용
신규 신청관 (=미지원관)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창을 통해 신청
추가지원 희망관 (=현재 전문인력 1인 지원 중인 관)	본 사업 전용메일(akpma2@hanmail.net)로 접수 (※기존 지원관도 심사 후 선정함)

○ 제출서류

※ 본 공고문 2-3페이지 '지원관 관리 기준(안)' 및 위 신청 구분에 따라, 각 관이 해당하는 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다만, 현재 전문인력 1인 지원 중인 관은 기 결정사항에 따라 신청 필수(본 공고문 4페이지 참조)

구분	세부 내용	
신규관	필수제출(공통)	① 3차공모_기관지원신청서(신규관) (별첨2-1)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동의서 3종 (별첨3)
	매뉴얼 제출 이력이 없는 관 필수제출	⑤ 미술관의 각종 매뉴얼(*)
경력관_단년 지원	필수제출(공통)	① 3차공모_기관지원신청서(경력관_단년지원) (별첨2-2)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동의서 3종 (별첨3)
	매뉴얼 제출 이력이 없는 관 필수제출	⑤ 미술관의 각종 매뉴얼(*)
경력관_다년 지원	필수제출(공통)	① 3차공모_기관지원신청서(경력관_다년지원) (별첨2-3)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동의서 3종 (별첨3)
	매뉴얼 제출 이력이 없는 관 필수제출	⑤ 미술관의 각종 매뉴얼(*)

*기관지원신청서(별첨2-1~3)의 IV.미술관 현황 > 1.미술관현황 내 '운영 관련 각종 규정 구비 여부'에서 구비 선택한 매뉴얼은 전부 제출

※ 제출문서에 기관장 확인 및 날인 필수

※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협회가 제시한 작성 방법 및 발급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시 감점 혹은 심사 제외될 수 있으니, 제출서류 확인 필수

Ⅲ. 지원관 선정 심사

○ 심사방법 : 서류심사 (일부 관은 현장조사 병행할 수 있음)

○ 심사기준(안)

*다년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단년 지원관으로 선정될 수 있음(반대의 경우는 해당없음)

1) 단년 지원관 선정심사 기준(안)

심사기준	유형	항목	배점

사업수행 역량	정성	[지표1] 2024년 미술관 활동 실적	10
		[지표2] 2025년 미술관 활동 계획 (목표의 구체성, 계획의 충실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15
인력운영 적정성	정성	[지표3] 전문인력(큐레이터・에듀케이터) 활용 계획 (직무배치 및 업무계획, 평가계획 등 구체성 및 적절성)	20
	정성	[지표4] 인력의 전문성·역량 향상 및 경력개발 계획 (목표의 구체성, 계획의 충실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20
	정성	[지표5] 지원인력과 업무내용의 양적·질적 연계	5
	정성	[지표6] 인력 지원의 형평성	5
고용환경	정량	[지표7] 6개월 이상 지속근무한 미술관 근로자 수 *조회기간 : 2024.1.1.~2024.12.31.까지 *발급시점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 *제출자료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5
	정량	[지표8] 미술관 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 비율 *발급시점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 *제출자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정성	[지표9] 미술관 근로자의 근무환경·처우 개선 계획	10
	정성	[지표10] 지원사업 행정업무 역량	5
가산점	정량	2024년 동 사업 평가결과 *우수인력 배출 및 우수관은 최고점(5점) *가산점 없음(0점 처리) :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관, 평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관, 2024년 동 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관, 지원관이었으나 중도퇴사 등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관	5
	정량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위치한 관	1
합계(최대점수 기준)			106

2) 다년 지원관 선정심사 기준(안)

심사기준	유형	항목	배점
사업수행 역량	정성	[지표1] 2024년 미술관 활동 실적	5
		[지표2] 2025~2027년 미술관 활동 계획 (목표의 구체성, 계획의 충실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15
인력운영 적정성	정성	[지표3] 전문인력(큐레이터・에듀케이터) 활용 계획 (직무배치 및 업무계획, 평가계획 등 구체성 및 적절성)	20
	정성	[지표4] 인력의 전문성·역량 향상 및 경력개발 계획 (목표의 구체성, 계획의 충실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30
	정성	[지표5] 지원인력과 업무내용의 양적·질적 연계	5
	정성	[지표6] 인력 지원의 형평성	5
고용환경	정량	[지표7] 6개월 이상 지속근무한 미술관 근로자 수 *조회기간 : 2024.1.1.~2024.12.31.까지 *발급시점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 *제출자료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5
	정량	[지표8] 미술관 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 비율	5

		*발급시점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 *제출자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정성	[지표9] 미술관 근로자의 근무환경·처우 개선 계획	5
	정성	[지표10] 지원사업 행정업무 역량	5
가산점	정량	2024년 동 사업 평가결과 *우수인력 배출 및 우수관은 최고점(5점) *가산점 없음(0점 처리) :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관, 평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관, 2024년 동 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관, 지원관이었으나 중도퇴사 등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관	5
	정량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위치한 관	1
합계(최대점수 기준)			106

[참고]

• [지표7], [지표8]는 미술관이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함.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경우 2점 감점하며, 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 [지표7], [지표8] 점수 산출 시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협회 지원 전문인력 및 예비학예인력은 숫자에서 제외

※ 지원관 선정심사 시 고려사항

-전년도 본 사업 우수관 및 우수인력을 배출한 관 : 신청 시 2년(2025~2026년) 지원관으로 자동 선정, 지원인력 희망인원 수 우선 배정(최대 2명/지원 구분 없음)

-다년 지원관은 총 지원관의 40% 이내로 선정(2024년 우수관 및 우수인력 배출관 포함)하며, 다년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단년 지원관으로 선정될 수 있음(반대의 경우는 해당없음)

-심사 결과, 상위 15% 이내인 관 : 지원관 우선 선정, 지원인력 희망인원 수 우선 배정(최대 2명/지원 구분 없음)

-상위 15%에 포함되지 않는 관이 지원인력 2명(지원 구분 없음)을 신청한 경우, '인력운영 적정성' 점수가 높은 관을 우선함

-상근학예사가 학예사자격증 미소지자인 관은 심의위원회 면담 후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불가 : 관장 및 관 대표의 성범죄 이력 확인 관

-동 사업 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 미술관 운영 또는 인력 관리에 문제가 있는 관, 동 사업 외 타 국고 또는 지자체 지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관은 시정 또는 개선 전까지 지원 배제

-동 사업 및 타 국고 또는 지자체 지원 포함, e나라도움시스템에 의한 지적사항 발생관은 2년간 지원 유예

ㅇ 심사일정 (아래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일정	비 고
지원관 공모	2025. 5. 22.(목) ~ 5. 30.(금) 18시까지	
지원관 선정심사 및 결과발표	2025년 6월 1주경	일부 관 현장조사 병행할 수 있음
		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ㅇ 사업 추진 일정

구 분	일정	비 고
선정관 인력모집 안내 및 채용결과 협회 제출	2025년 6월 1주 ~ 6월 3주	• 지원관 발표 직후 인력 모집 시행 • 선정관 발표 시 협회가 안내하는 모집공고문을 사용하여 공개모집 필수
협회와 심사위원회 검토 후 인력채용 확정 통보	~2025년 6월 3주	
미술관 현장 근무 개시	2025년 6월 4주 이후 ~ 12월 5주	사전교육, 직무교육 등 실시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2026년 1월 5주	

▶ 서류의 내용이 추후에라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에 대한 반납조치함.

▶ 문의처 :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이정미 과장, 김선정 주임, 이승윤 주임

tel. 02-735-4032, 02-735-4033, 02-732-4039

Ⅳ. 유의사항

- 협회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발표, 선정관 공문 발송

- 선정관이 인력배치 후에라도 관리 미흡으로 중도퇴사 발생 또는 사업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후보관으로 교체

- 협회는 본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필요할 경우 지원 미술관의 사업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자료 요청・실사・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경고・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신청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인적・물적, 기관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신청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

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신청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외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선정 후 유의 사항]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 및 선정 확정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선정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등 시스템 이용 필수
-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련 법령 준수
-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사업관리를 위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조사업자는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
- 기타 본 공고문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해야 함